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유가족 “법원 판결로 가족 또 죽어”

재판부, 결박도구 ‘케이블타이’ 증거부족판단
“생존동안 가석방 허용 안돼...법관 공통 견해”
이양어머니 오열...검찰에 항소 요청 입장
변호인단 “여죄까지 종합 ‘사형 선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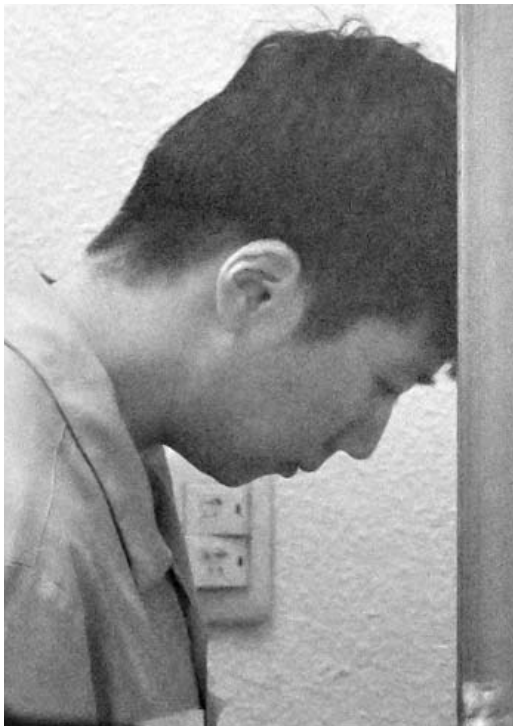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장윤기(23)에 대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유가족 측이 울분을 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열은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서 들어선 장윤기는 시종일관 짝다리를 짚고 서 있거나 손가락을 꼬는 등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과 강간상해·감금, 스토킹, 살인예비, 살인미수, 불법촬영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각 2자루와 휴대전화 1개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장윤기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한 케이블타이는 범행 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에서 출정하고 있다. (사진왼쪽) 이날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구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 차량 조수석 문 수납함에 케이블타이가 든 지퍼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판단에서는 사형 선고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법관들 역시 인간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숙고했다”며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고심했음을 밝혔다.

다만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장윤기의 연령과 전과, 범행 경위와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점과 대법원의 제한적 사형 선고 기준, 기존 동종 사건과의 비례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형 집행에 관한 판단이 가석방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지만, 장윤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신 복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자 유사 범죄 재발을 막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전했다.

이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진정한 양형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의 어머니는 재판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던 하루의 감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범죄해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인 김문석 변호사는 “결국 재판부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선고할 것인가였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분석해 항소심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참혹성, 피해자 부모의 입장 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마다 적용된 죄명은 다르지만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등 결국 각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지는 동일하다”며 “이 같은 여죄까지 종합해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조례 심의하기도 전 시행규칙부터...북구 ‘황당 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개정 내용을 전제로 한 시행규칙부터 공포·시행하는 행정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책보좌관 문재와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잇따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조례 심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0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4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북구는 의회 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15일 이들 조례 개정안과 연계된 시행규칙 2건을 먼저 공포했다.

의회 심사 사흘 앞두고 관련 규칙 공포
5단계 결재라인 거치고도 오류 못 걸러
정책보좌관·급경사지 이어 의회와 또 마찰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행규칙에는 김장철인 11·12월 사용할 수 있는 20ℓ 전용봉투 규격을 신설하고 판매가격을 1천400원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같은 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도 공포됐다.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기도 전에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부 규칙부터 공포·시행한 셈이다.

더욱이 관련 규칙은 담당 팀장과 과장, 국장, 부구청장을 거쳐 구청장까지 결재됐지만 이 과

정에서도 절차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문제는 시행규칙 공포 다음 날인 지난 16일 열린 북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대서 의원은 신수정 북구청장에게 “의회의 심사 없이 조례가 공포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에서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문 제 삼았다.

신 청장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먼저 올린 것은 아니다”며 “규칙안이다 보니 결재를 해야 하는데 빠르게 결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북구와 북구의회는 정책보좌관 채용 자격요건 검증과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둘러싸고도 의혹 제기와 반박을 주고받는 등 마찰을 빚었다.

/윤찬용 기자

무안공항 참사 재수색...희생자 141명 유해 확인

5개월간 1천709점 추가 수습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재수색에서 추가로 수습된 유해가 희생자 141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국제공항 재수색 현장에서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유해 재수색 추진경과 보고 및 점검 설명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13일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재수색에서 유해 추정물 1천709점과 유류품 906점이 수습됐다고 설명했다.

유해 추정물 중 1천100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회신됐으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1명이다. 나머지 100점은 감정이 진행중으로, 결과회신까지 3~4주가 걸릴 예정이다.

당국은 땅속에 묻힌 유해까지 찾기 위해 군 유해 발굴과 경찰 과학수사 기법을 적용했다. 군·경찰·소방 등 하루 평균 200~300명이 공항 안

팍 약 2만2천㎡에서 땅을 파고 흙을 체로 거르는 정밀 수색을 벌였다.

작은 편을 놓치지 않도록 체의 구멍 크기를 기존 8mm에서 3~5mm까지 줄였고, 배수로와 시설물 주변 등 사각지대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게 재수색 당국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계획된 구역에 대한 수색이 마무리됐으나 이날 설명회가 전체 재수색 종료를 선언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둔덕 일부 구간은 구조물 붕괴 우려가 제기돼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유가족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추가 수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장 재수색이 마무리되더라도 추가 발견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며 “유해 추정물이 추가로 발견되면 현장 보존과 확인·감식, 필요할 경우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수색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